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중보건의 배치 지역 추가 》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96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8

I. 개요

1.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769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 22.
- (3) 회 부 일 : 2025. 1.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 (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라 함)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로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II.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생략)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공중보건직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 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직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직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외에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도시 민간병원’ 등이 있음. 다만,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경우 공중보건직의사 자원감소를 이유로 2011년부터 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상 공중보건의 배치기관 및 시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공중보건직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직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직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공중보건직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2.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참고로, 2024년 기준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¹⁾ 및 보건지소²⁾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보건소에 집중되어 있음.

< 2024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

(’24.9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보건(지)소	병원선·이동진료반	국·공립 병원	국가보건 기관 ¹⁾	응급의료 기관 등 ²⁾	보건단체 복지시설 ³⁾	교정시설 등
전체 (의과,치과,한의학)	2,854	2,417	30	183	55	77	4	88
의과	1,206	967	10	104	14	77	3	31

- 1) 질병관리청, 시·도 역학조사관, 국립검역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2) 응급의료취약지인 시·군 소재 응급의료지정병원
 3)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 노숙인 무료진료소 등

□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³⁾에 따르면 전국 의사 인력 (166,197명)의 약 28%(46,624명)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병·의원 수도 타 지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1인당

1)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2024. 12. 1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참조

월 평균 진료비가 가장 많은 전남(참고자료 참조)의 경우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지역별 의료 이용의 편차가 심각한바,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된 시행령 규정을 상향 입법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기관의 범위에 중소도시 민간병원을 명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⁴⁾.

< 시·도별 요양기관⁵⁾ 및 의료인력 현황 >

(단위: 개소, 명)

시·도	요양기관	의사	간호사	시·도	요양기관	의사	간호사
계	101,762	166,197	269,434	경기	23,007	36,309	54,316
서울	24,364	46,624	63,480	강원	2,657	4,098	7,434
부산	7,209	12,120	22,455	충북	2,923	3,896	5,957
대구	5,461	9,006	16,357	충남	3,791	5,132	7,505
인천	4,971	8,187	14,194	전북	3,911	5,599	9,470
광주	3,023	5,552	10,929	전남	3,476	4,750	10,007
대전	3,086	5,419	8,919	경북	4,472	5,638	10,964
울산	1,865	2,790	5,756	경남	5,574	8,465	17,362
세종	619	811	1,091	제주	1,353	1,801	3,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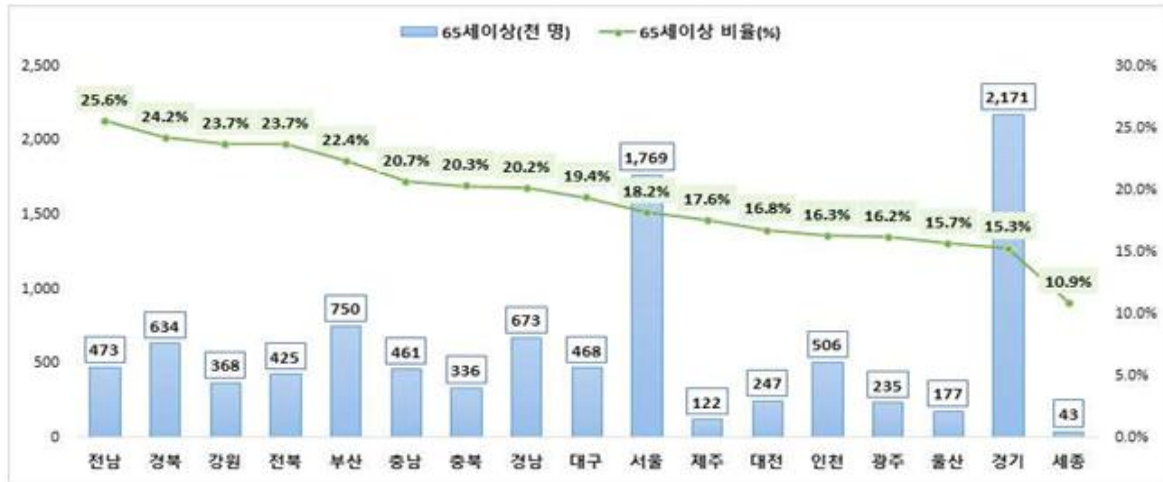
주) 의사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기준(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4)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을 포함할 경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 배치될 공중보건의사의 수를 가정해야 하나, 개정안은 이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힘.

5)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⁶⁾ 적용 인구 >



□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 18개월보다 2배 길 뿐만 아니라⁷⁾, 의대생의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필수 배치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그 외,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구체적 기준 설정⁸⁾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 추이 >

(단위: 명)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	1,309	1,033	1,048	1,107	709

6) 의료보장 적용인구: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복무기간: 공군 21개월, 해군 20개월, 해병대 18개월, 공익근무 21개월

8)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대학병원 제외) 및 응급의료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고 24시간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중이며, 개정안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음.

< 2024년 의과 공보의 보건소/보건지소 배치 현황 >

('24.6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지침상 공보의 배치대상 기관 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배치율)
보건소	138	129 (93.5%)
보건지소	1,223	665 (54.4%)

* 지자체 제출자료를 보건복지부 재구성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자원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공중보건의 자원 현황 및 추세를 고려하여 배치기관 확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필수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한 보건소 및 의료취약지역 배치기관조차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공중보건의사를 민간병원에 배치할 경우 일부 민간병원이 공중보건의사를 지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진료에 투입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 미비를 악용한 부당한 처우가 염려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

< 참고자료 >

< 시·도별 1인당 월 평균 진료비 현황 >

(단위: 원)

순위	시·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전국(평균)	201,853
1	전남	255,518
2	전북	242,516
3	부산	237,164
4	경북	222,914
5	경남	216,788
6	광주	212,784
7	대구	208,875
8	강원	205,437
9	충남	204,629
10	충북	200,972
11	인천	197,960
12	대전	193,284
13	서울	193,059
14	울산	191,281
15	제주	183,042
16	경기	181,394
17	세종	160,644